2019년 지역별·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2020. 2.



순서

I. 산출 기준 ······ 1
II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······ 2
II-1. 전체 사건 ······ 2
II-2. 일반 사건 ······ 3
III. 용어 정의 ······ 4

1. 산출기준

□ 산출 기준

- 본 통계 자료는 2019. 1. 1. ~ 2019. 12. 31.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 기준
- 각 통계표상 표시된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, 기준 및 단위는 오른쪽 위에 표시함. 부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 - '-': 해당사항 없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
- '일반 사건'은 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(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27조제8항, 이하 의료분쟁조정법)이며, '전체 사건'은 위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^{*}을 갖출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9항)의 계수를 합친 통계임
 - *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,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II. 2019년 지역별·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Ⅱ-1. 전체 사건

(2019.1.1. ~ 2019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							(201	9.1.1. ~	2013.12	UI.(日	[일] 기 :	<u> </u>	- 건, %)
구분		계	나 장종 병	종합 병원	병원	의원	치과 병원	치과 의원	한방 병원	한의원	요양 병원	약국	보건소 •지소
계	개시 각하 개시율	1,784 1,029 63.4	400 140 74.1	522 247 67.9	364 199 64.7	271 281 49.1	34 13 72.3	116 114 50.4	12 2 85.7	19 12 61.3	41 19 68.3	3 2 60.0	2 0 100.0
서울	개시 각하 개시율	521 359 59.2	159 61 72.3	99 62 61.5	93 62 60.0	103 117 46.8	6 10 37.5	43 39 52.4	7 1 87.5	5 6 4 <u>5.5</u>	4 1 80.0	2 - 100.0	- - -
경기	개시 각하 개시율	346 223 60.8	34 33 50.7	122 69 63.9	85 40 68.0	52 55 48.6	8 - 100.0	19 20 48.7	1 0.0	7 2 77.8	17 2 89.5	1 1 50.0	1 0 100.0
인천	개시 각하 개시율	120 80 60.0	22 22 50.0	35 24 59.3	37 10 78.7	12 14 46.2	1 1	11 6 64.7	- - -	1 - 100.0	2 3 40.0	1 0.0	-
부산	개시 각하 개시율	143 81 63.8	32 6 84.2	37 22 62.7	35 23 60.3	19 18 51.4	3 - 100.0	13 8 61.9	- - -	1 1 50.0	3 3 50.0	- - -	- - -
경남	개시 각하 개시율	137 39 77.8	38 1 97.4	50 12 80.6	22 12 64.7	13 8 61.9	4 - 100.0	5 4 55.6	- - -	- 1 0.0	4 1 80.0	- - -	1 0 100.0
울산	개시 각하 개시율	29 7 80.6	- - -	20 3 87.0	2 1 66.7	4 1 80.0	- - -	2 1 66.7	- - -	1 - 100.0	- 1 0.0	- - -	- - -
대구	개시 각하 개시율	68 36 65.4	33 7 82.5	3 4 42.9	19 10 65.5	7 11 38.9	4 1 80.0	1 1 50.0	- - -	- 1 0.0	1 1 50.0	- - -	- - -
경북	개시 각하 개시율	49 27 64.5	- - -	28 13 68.3	7 4 63.6	5 8 38.5	- - -	5 2 71.4	- - -	- - -	4 - 100.0	- - -	
광주	개시 각하 개시율	50 15 76.9	14 1 93.3	22 1 95.7	6 3 66.7	5 5 5 50.0	1 - 100.0	1 5 16.7	1 - 100.0		- - -	- - -	- - -
전북	개시 각하 개시율	41 26 61.2	14 0 100.0	12 3 80.0	5 9 35.7	5 8 38.5	2 - 100.0	3 5 37.5	- - -		- 1 0.0	- - -	- - -
전남	개시 각하 개시율	29 21 58.0	6 - 100.0	4 4 50.0	16 6 72.7	- 5 0.0	- 1 0.0	2 4 33.3	- - -	- - -	1 1 50.0	- - -	- - -
제주	개시 각하 개시율	26 4 86.7	11 1 91.7	11 1 91.7	- 1 0.0	4 1 80.0	- - -	- - -	- - -	-	- - -	- - -	- - -
대전	개시 각하 개시율	78 38 67.2	7 5 58.3	36 5 87.8	16 10 61.5	12 12 50.0	1 - 100.0	1 4 20.0	2 - 100.0	3 - 100.0	- 2 0.0	- - -	-
충남	개시 각하 개시율	40 28 58.8	19 2 90.5	3 7 30.0	6 4 60.0	5 5 5 50.0	- - -	3 8 27.3	- - -	- - -	4 2 66.7	- - -	- - -
충북	기시설 개시 각하 개시율	54 23 70.1	8 1 88.9	19 7 73.1	8 2 80.0	15 6 71.4	- 1 0.0	3 5 37.5	- - -	1 - 100.0	- 1 0.0	_ _ _ _	_ _ _
세종	개시 각하	4 1		-	-	2 1	1 –	1 –	-	-	-	-	-
강원	개시율 개시 각하 개시율	80.0 49 21 61.8	3 - 100.0	21 10 60.0	7 2 75.0	66.7 8 6 25.0	100.0 4 - 100.0	100.0 3 2 60.0	2 - 100.0	- 1 0.0	1 - 100.0	- - - -	- - -

^{*} 개시율 : 개시건수 ÷ (개시건수 + 각하건수) × 100

Ⅱ-2. 일반 사건

(2019.1.1. ~ 2019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-	구분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의원	치과 병원	치과 의원	한방 병원	한의원	요양 병원	약국	보건소 •지소
계	개시 각하 개시율	1,262 1,029 55.1	185 140 56.9	321 247 56.5	312 199 61.1	241 281 46.2	33 13 71.7	115 114 50.2	9 2 81.8	19 12 61.3	23 19 54.8	2 2 50.0	2 - 100.0
서울	개시 각하 개시율	365 359 50.4	72 61 54.1	50 62 44. 6	83 62 57.2	100 117 46.1	5 10 33.3	43 39 52.4	5 1 83.3	4 6 40.0	1 1 50.0	2 - 100.0	- - -
경기	개시 각하 개시율	237 223 51.5	5 33 13.2	71 69 50.7	74 40 64.9	44 55 44.4	8 - 100.0	19 20 48.7	- 1 0.0	7 2 77.8	8 2 80.0	0 1 0.0	1 - 100.0
인천	개시 각하 개시율	86 80 51.8	5 22 18.5	24 24 50.0	32 10 76.2	12 14 46.2	- - -	10 6 62.5	- - -	1 - 100.0	2 3 40.0	- 1 0.0	- - -
부산	개시 각하 개시율	99 81 55.0	17 6 73.9	18 22 45.0	29 23 55.8	17 18 48.6	3 - 100.0	13 8 61.9	- - -	1 1 50.0	1 3 25.0	- - -	- - -
경남	개시 각하 개시율	105 39 72.9	25 1 96.2	38 12 76.0	18 12 60.0	10 8 55.6	4 - 100.0	5 4 55.6	- - -	- 1 0.0	4 1 80.0	- - -	1 - 100.0
울산	개시 각하 개시율	24 7 77.4	- - -	16 3 84.2	2 1 66.7	3 1 75.0	- - -	2 1 66.7	- - -	1 - 100.0	- 1 0.0	- - -	- - -
대구	개시 각하 개시율	42 36 53.8	15 7 68.2	1 4 20.0	15 10 60.0	6 11 35.3	4 1 80.0	1 1 50.0	- - -	- 1 0.0	- 1 0.0	- - -	- - -
경북	개시 각하 개시율	31 27 53.4	- - -	14 13 51.9	5 4 55.6	5 8 38.5	- - -	5 2 71.4	- - -	- - -	2 - 100.0	- - -	- - -
광주	개시 각하 개시율	36 15 70.6	6 1 85.7	18 1 94.7	4 3 57.1	5 5 5 50.0	1 - 100.0	1 5 16.7	- - -	1 - 100.0	- - -	- - -	- - -
전북	개시 각하 개시율	32 26 55.2	7 - 100.0	10 3 76.9	5 9 35.7	5 8 38.5	2 - 100.0	3 5 37.5	- - -	- - -	- 1 0.0	- - -	- - -
전남	개시 각하 개시율	21 21 50.0	1 - 100.0	1 4 20.0	16 6 72.7	- 5 0.0	- 1 0.0	2 4 33.3	- - -	- - -	1 1 50.0	- - -	- - -
제주	기(시설 개시 각하 개시율	20 4 83.3	10 10 1 90.9	7 1 87.5	- 1 0.0	3 1 75.0	- - -	- - -	- - -	- - -		- - -	- - -
대전	기시설 개시 각하 개시율	61 38 61.6	6 5 54.5	24 5 82.8	12 10 54.5	12 12 50.0	1 0 100.0	1 4 20.0	2 0 100.0	3 0 100.0	0 2 0.0	_ _ _ _	_ _ _
충남	개시 <u>물</u> 개시 각하 개시율	24 28 46.2	10 2 83.3	02.0 1 7 12.5	3 4	4 5	- - -	3 8 27.3	- -	- -	3 2	-	-
충북	개시 각하	41 23	5 1	13 7	8 2	44.4 11 6	- 1	3 5	- - -	1 - 100.0	60.0 - 1	_ _ _	_ _ _
세종	개시율 개시 각하	64.1 4 1	83.3 - -	65.0 - -	80.0 - -	64.7 2 1	0.0	37.5 1 -	_ _ _	100.0 - -	0.0 - -	_ _ _	_ _ _
강원	개시율 개시 각하 개시율	80.0 34 21 61.8	1 - 100.0	15 10 60.0	- 6 2 75.0	66.7 2 6 25.0	100.0 4 - 100.0	100.0 3 2 60.0	2 - 100.0	- 1 0.0	1 - 100.0	- - - -	- - -

^{*} 개시율 : 개시건수 ÷ (개시건수 + 각하건수) × 100

Ⅱ. 용어 정의

1 의료분쟁 관련 용어 정의

0 조정

-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 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,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제36조)

ㅇ 중재

-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(私法) 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,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(「의료분쟁조정법」제44조)

○ 조정 절차 개시

-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고,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함(「의료분쟁조정법」제27조제8항)
- 다만, '16.11.30.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의 대상이 사망, 1개월 이상 의식불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급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에 조정절차는 개시됨

② 보건의료기관 종별 유형 정의

ㅇ 상급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
 - 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
- 2. 「의료법」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 시키는 기관일 것
- 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 갖출 것
- 4.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(「의료법」제3조의4제1항 및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제2조 및 별표)

ㅇ 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함
 - 1.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
 - 2.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·외과·소아 청소년과·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 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 - 3.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(「의료법」제3조의3제1항)

0 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ㅇ 치과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치과인 곳(「의료법」제3조의2)

ㅇ 한방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한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ㅇ 요양병원

- 30개 이상의 요양병상(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

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)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(「의료법」제3조의2)

ㅇ 의원

-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(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1호)

ㅇ 치과의원

- 치과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(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1호)

ㅇ 하의워

-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(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1호)

ㅇ 약국

-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[약국제제 (藥局製劑)를 포함한다]를 하는 장소(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)를 말함. 다만,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예외로 함(「약사법」제2조제3호)

ㅇ 보건소(보건지소)

-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·군·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행정기관으로서, 보건소의 지소를 보건지소라 함(「지역보건법」제10조)

ㅇ 보건의료원

- 보건소 중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하며, 보건소 업무에 진료 및 입원기능을 특화한 것으로 주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설치·운영함(「지역보건법」제8조)